| 지식경제부 | 보도자료 |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 |
|---|---|---|
| '12년 2월 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
| 자료문의 : 최우석 정보통신산업과장(2110-4810), 최승규 주무관(2110-4816) | | |

# 『휴대폰 가격표시제』 이행실태 점검 결과

## - 대리점(위반율 7.4%) 보다 판매점(위반율 14.3%)이 여전히 문제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1.9~1.20 기간동안 16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『휴대폰 가격표시제』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음

○ 금번 점검에서는 지경부, 지자체, 소비자 단체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, 가격미표시, 공짜폰 표시(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표시하는 행위), 출고가격 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음

○ 점검결과 대리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, 판매점에서 가격미표시·공짜폰 광고 등 위반사례가 많았음

**<휴대폰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(1.9~20)>**

| 구 분 | | 점검업체수 | 위반업체수 | 위반사례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가격 미표시 | 공짜폰 표시 | 출고가 표시 |
| 판매점 | | 3,315 | 475 | 396 | 83 | 47 |
| 대리점 | SKT | 474 | 25 | 21 | 4 | 1 |
| | KT | 357 | 28 | 28 | 2 | 2 |
| | LG U+ | 316 | 32 | 25 | 8 | 1 |
| | 계 | 1147 | 85 | 74 | 14 | 4 |
| 합 계 | | **4,462** | **560** | **470** | **97** | **51** |

* 대리점 : 특정 통신사만 취급하는 매장, 판매점 : 통신3사 모두 취급하는 매장
* 공짜폰 표시 : 통신요금 할인금액 반영하여 판매하는 것 포함
* 위반사례 집계방법 : 업체당 위반사례별로 각 최대 1건으로 집계



□ 세부 점검 결과

○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약4,500여개 업체를 점검하여 이중 560업체가 위반하였으며, 위반율은 평균 12.6%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

- 위반업체중 대리점 85업체, 판매점 475업체가 위반하였음

- 위반내용으로는 가격미표시 470건(76%), 공짜폰 표시(통신요금할인액 반영) 97건(15.7%), 출고가 표시 51건(8.3%)이었으며, 중복으로 위반한 곳은 58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남

○ 온라인사이트 업체(주요 16개 업체)의 경우 공짜, 무료, 0원폰 등 문구는 전반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남

- 다만, 판매·결제 시스템 변경에 시간 소요로 초기 검색 화면인 카테고리 부분에 실제 판매가격 표시는 지연

- '판매가(결제가) 공짜·1원폰'은 행정지도를 통해 판매수수료로 변경·표시 중이며 소비자 혼동을 줄이기 위해 팝업창 등을 통해 안내 병행중

* 온라인사이트 업체중 'CJ오쇼핑, 롯데홈쇼핑'에서는 1.31일 현재 '판매가 공짜·1원폰'으로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남

* 일부 온라인사이트상 판매가(결제가)라는 표시는 실제 휴대폰 판매가격이 아니라 판매사이트 이용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임 (예)판매가 1원, 100원, 1000원

□ 실태점검 결과 향후 조치계획

①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560개 매장 및 온라인사이트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정권고 조치 및 향후 추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예정

- 이들 업체가 추후 위반시에는 과태료(20만원부터 최대 500백만원)를 부과할 계획

② 점검 결과 지자체의 건의사항 등을 감안하여 보완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 및 지자체 등에 통보 예정임

1) 주로 외부에 전시되고 있으나, 현재 팔지 않는 모형제품(목업 Mock-up)에 대해서도 판매가격 표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

○ '비매품'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,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. 다만, 모형제품이라도 실제 판매가 되고 있으면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함

2) 휴대폰은 판매하지 않는 액세서리 전문매장도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

○ 휴대폰 가격표시제 적용 대상(예 : 공짜폰 금지, 출고가 표시금지 등)은 아니나, 액세서리도 공산품인 만큼 공산품 가격표시제를 따라 가격을 표시해야 함

3) 통신사 등의 잦은 판매장려금 변경으로 인해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판매점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

○ 최근 LTE시장 중심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과열된 통신시장에 대해 '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6조 및 제7조'에 따라 제조사 및 이통사에 출고가 및 판매장려금 현실화를 통해 안정되도록 요청할 예정

- 아울러, 기존 유통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영업 패러다임이 변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

○ 다만, 휴대폰 판매가격은 판매자가 가격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자기 책임하에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표시해야 할 것임



□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짜폰 판매 등 휴대폰 판매 마케팅이 쉽게 바뀌긴 어렵겠으나, 전반적으로 어느정도 공짜폰 판매가 사라진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

○ 휴대폰 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지자체,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수시 및 정기 점검할 예정임

- 특히 표시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상이한 허위 판매행위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집중 점검할 계획

○ 소비자들도 실제판매 가격이 제대로 표시된 신뢰할만한 대리점,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등 휴대폰 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